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534호
- 발 의 자 : 김정환 의원(찬성자 18명)
- 발의일자 : 2019년 3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03일

## 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운영 박물관에서의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서울시 운영 박물관 관람료 면제의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5조제1항4호의 신설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 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 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 
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안의 취지

- 동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의사상자 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려는 동 조례안의 취지는 문화 진흥정책의 제도 내에서 문화를 통한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하여 의사상자 등의 문화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의사상자 등의 법적 지원 근거

#### 1) 의사상자 등의 정의규정

- 의사상자(義死傷者)에 대한 정의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을 정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우를 하고 있음.

##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"의사자(義死者)"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(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3. "의상자(義傷者)"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4. "의사상자"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.

##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7조의2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법 제15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의상자. 다만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.
2.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. 다만,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.
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
### 2) 의사상자 등의 지원 범위

-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804명이고,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146명(의사자 85, 의상자 61)임.<sup>1)</sup>
- 의사상자 등에게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에 따라 고궁, 국립공원, 국립박물관 및 수목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음.

1) 보건복지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이트

##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〔별표 3〕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(제18조제3항 관련)

시설의 종류	요금 감면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1. 고궁 및 능원	100분의 100
2. 국공립 공원	100분의 100
3. 독립기념관	100분의 100
4. 전쟁기념관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100
5.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(대관전시는 제외한다)	100분의 100
6. 국공립 수목원	100분의 100
7. 국공립 자연휴양림	100분의 100
8. 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50
9.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100분의 50

- 서울시는 위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##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**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**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「법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공원 입장료, 공연장 이용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2.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,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
3. 명절(설, 한가위)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
4.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
5.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따라서 동 조례안처럼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 미술관의 무료 관람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사료되며,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(9월4일 심의 예정).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서울특별시장 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「법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공원 입장료, 공연장 이용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「법」 제15조, 시행령 제17조의2 및 별표3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- 또한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1항은 무료관람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박물관의 관람료는 국민, 외교사절단,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, 조사연구자 등 공무수행 하는 자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특정 연령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명예시민 등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, 의사상자 등은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.

## 〈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민·외교사절단 및 수행자</li> <li>2.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li>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&lt;신 설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</li> <li>6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</li> <li>7.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</li> <li>8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</li> <li>9.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</li> <li>10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</li> <li>11.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li> </ol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4.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~ 11. (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li> </ol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-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박물관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지원하는 동 조례안은 문화 진흥정책의 제도 내에서 문화를 통한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서, '박물관 도시 서울' 이라는 서울시립박물관의 비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됨.
- 사회정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문화향유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사상자 등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 이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특히 문화본부는 '19년 개관예정인 서울생활사박물관, 서울우리소리 박물관과 '20년 개관예정인 서울공예박물관의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, 박물관을 통한 시민의 일상 속 문화시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동 조례안을 통해 전 시민 균등한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# 건립중인 박물관의 차질 없는 개관 준비

《 문화본부 》

건립 중인 박물관 중 개관이 임박한 시설에 대한 공정관리, 조직·인력 구성 및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는 개관을 준비하고자 함

## 서울생활사박물관 : '19.9월 개관예정

- 위치/규모 : 노원구 동일로(舊 북부지원) / 6,919 $m^2$ (지하1층/지상5층)
- 공간구성 : 생활사 전시실, 어린이 체험실, 구치감 전시실
- 총사업비 : 48,545백만원



※ 임시개관('19.7.26) 후 시범운영 중 : 누적 관람객 14,693명(8.14 기준)

## 서울우리소리박물관 : '19.11월 개관예정

- 위치/규모 : 종로구 와룡동(창덕궁 앞) / 1,385 $m^2$ (지하2층/지상1층)
- 공간구성 : 상설전시실, 음악감상실, 아카이브실, 영상실
- 총사업비 : 21,258백만원



## 서울공예박물관 : '20.10월 개관예정

- 위치/규모 : 종로구 율곡로(舊 풍문여고) / 10,590 $m^2$ (지상3~5층)
- 공간구성 : 전시실, 뮤지엄샵, 공방, 수장고
- 총사업비 : 180,401백만원



◆ 새롭게 개관하는 박물관이 성공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개관 이후 운영예산 편성 등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